

『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5월 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5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5월 15일

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정책기획실장 박 세 범

나. 제안이유

- 신라불교가 최초로 전해진 역사의 현장을 보전하고, 불교문화를 전시·체험·교육하기 위해 조성된 ‘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’의 전문적·효율적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, 우리시의 명품 문화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관광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신라불교문화초전지의 목적, 정의, 위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조 ~ 제4조)
-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 ~ 제15조)
- 관리 및 운영,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6조 ~ 제23조)
-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4조 ~ 제33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,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근 도

○ 본 『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』은

- 신라불교가 최초로 전해진 역사의 현장을 전승·보전하고, 불교문화를 전시·체험·교육하기 위해 조성된 ‘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’ 시설의 전문적·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관광자원 확보 및 지역 관광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